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 가 기 술 자 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경덕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시행을 위해 개명·사망 여부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변경,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(안 제9조)
- 나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시행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 마련(안 제33조의2)
- 다.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이러닝운영관리사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검정 기준에 해당 내용을 반영(안 별표 1 및 별표 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한국직업능력개발원”을 “한국직업능력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2.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에 따른 운전면허전산정보자료
3. 「여권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전산정보자료

③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영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④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별표 1의 직종의 텔레마케팅관리사란 다음에 이러닝운영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러닝운영관리사

별표 3의 제2호의 직종의 텔레마케팅관리사란 다음에 이러닝운영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러닝운영관리사	단일	1.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
	등급	2. 교수학습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
		3. 이러닝 운영에 필요한 학습 자원 및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업무의 대행) 법 제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<u>한국직업능력개발원</u> 3. (생략)	제9조(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업무의 대행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한국직업능력연구원</u> 3. (현행과 같음)
제33조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<u>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</u> 2.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에

<신 설>	따른 운전면허전산정보자료 3. 「여권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전산정보자료
<신 설>	③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가 이 영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. ④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88